

# 중독의 신경 과학과 자유 의지, 그리고 법적 책임: 한국 담배 소송에서의 금연과 중독\*

이두갑†

## 1. 서론

1999년 미국에서 귀국한 배금자 변호사는 금연운동협회를 찾아가 한국에서 담배 소송 제기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의 담배 소송의 법리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으며, 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금연운동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이 무보수로 흡연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익 소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들은 곧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를 공모하고 모집된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들을 대표하여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199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위해성과 중독성이 있는 담배를 제조·판매한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원고들에게 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sup>2</sup>

---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원고와 피고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도움을 주신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서울대 김인 연구 조원과 논문을 보완하고 주장을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앨런 브란트(Allan Brandt), 신유정, 과학사학회지 편집인,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분들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doogab@snu.ac.kr

<sup>2</sup> 서홍관, “담배소송”,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0년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19), 369-384. 한국 정부는 담배 시장 개방과 함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2002년 12월부터 주식 매각을 통해 그해 12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이 소장은 무엇보다 담배의 중독성과 금연의 어려움에 대한 증언들을 제시하며, 담배가 유해한 물질에 소비자를 중독시킬 수 있는 위법한 제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원고 중 한 명이었던 1938년생 소송 당시 61세 남자인 허00의 경우 “군대에 들어가서 국가가 담배를 무상 지급하였기 때문에 담배를 배우게 되었으며, 군대 3년간 내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곧 중독자”가 되었고, 이후 40살부터 “담배를 의지로 끊으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중독성이 심해 며칠을 못 견디고 담배를 다시 피웠고”, 또한 “은단, 금연껌 등을 사용했으나 역시 니코틴의 중독성이 워낙 심해 4-5일을 견디지 못하고 담배를 다시 피웠다. 그는 담배 이외에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어떠한 작업 환경에도 노출된 적이 없”었지만, 결국 1999년 폐암 2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원고인 1942년 생 소송 당시 57세의 남자 김00는 만 18세에 호기심에서 “동네 아이들”과 흡연을 시작했으며, 50대 초반부터 주로 약물을 사용하여, 그리고 본인의 의지로 끊어보려고 금연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중독이 워낙 심해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곤 하였다”고 증언했다. 1940년 생 소송 당시 59세의 남자인 조00의 경우 만 18세에 처음 담배를 접하였고, “1961년 군입대 기간에 국가에서 이들에 담배 한 갑 무상으로 제공하여” 담배에 중독되었으며, 50대에 “담배 끊는 파이프, 은단, 껌 등을 사용해”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중독이 심해 3-4일을 못 견디고 다시 담배를 피워야 했다”고 진술했다.<sup>3</sup>

본 논문은 1990년대 말 제기된 한국 담배 소송을 시작으로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법적 논쟁들의 전개 양상, 특히 한국 법정에서 담배와 같이 위해한 중독물의 제조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담배 소송은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을 근거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승소를 거둔 소송들에 영향을 받았다. 사실 1970년대를 거치며 미국 담배 소송은 다른 환경·보건 소송과는 다르게 담배 회사를 상대로 단 한 차례의 승소도 거두지 못하며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7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2년 동안 6번의 항소와 2번의 배심원 재판을 거치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어왔던 그린 대 아메리칸 담배 사 소송(*Green v. American Tobacco Company*)에서 담배 회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sup>4</sup> 이는 1960-70

3 원고소송대리인, “서울지방법원소장”, 사건번호 99가합104974호, 원고 김수만 외, 피고 대한민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 1999년 12월 12일, “III. 원고들의 흡연 경력과 발병”, 금연운동협의회 담배소송자료 보관소 (이하 담배소송자료로 표기).

년대 미국에서 화학 회사, 자동차 회사, 제약 회사, 기계 제조사 등 다양한 산업들이 건강과 보건, 환경 소송을 거치며 배상 명령과 규제 강화를 겪은 점에 비추어보면 다소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sup>5</sup> 1964년 미국 정부의 보건 총감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에서 흡연이 건강에 위해하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제품을 판매해 온 담배 산업은 소송과 규제에서 자유로운 면책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도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성공적 법적 전략을 구사하며 승소를 거두어 왔으며 계속되는 규제의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게다가 담배 회사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위험을 감수하는 남성성을 강조하거나 속박에서 자유로운 여성성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통해 사회적·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가장 위험한 상품”이라 일컬어지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 역사학자 로버트 프록터(Robert Proctor)는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그럼에도 담배 회사는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알렸기 때문에, 이미 위험을 인지한 소비자가 선택한 흡연에 대해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해 왔기 때문이라 지적한다.<sup>7</sup> 의학사학자 앨런 브란트(Allan Brandt)는 흡연의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웠던 흡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 법정과 문화에서 담배 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sup>8</sup>

그렇지만 미국 담배 소송의 역사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인식과 이와 연관된 법적 논쟁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4 Green v. American Tobacco Company, 397 U.S. 911 (1970).

5 Soraya Boudia and Nathalie Jas eds., *Toxicants, Health and Regulation since 1945* (London: Pickering & Chatto, 2013).

6 Robert N. Proctor, *Golden Holocaust: Origins of the Cigarette Catastrophe and the Case for Abol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7 Robert N. Proctor, “Everyone Knew but No One Had Proof: Tobacco Industry Use of Medical History Expertise in US Courts, 1990-2002,” *Tobacco Control* 15:4 (2006), 117-125.

8 Allan M. Brandt, “The Cigarette, Risk, and American Culture,” *Daedalus* 119:4 (1990), 155-176; John Knowle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Daedalus* 106:1 (1977), 57-80.

판결이 도출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는 1970년대 나타난 신경 과학, 특히 중독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이 점차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마련되었다. 1980년 미국의 법학 교수인 도널드 가너(Donald Garner)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지닌 중독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니코틴에 대한 의존(dependence)이라는 관점에서 흡연이 불러일으킨 사망과 질병, 장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9</sup> 일례로 1979년 한 연구는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청소년들 중 오직 15%만이 담배에 의존적인 흡연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했다.<sup>10</sup> 가너는 특히 니코틴이 지니는 중독성에 대한 이해는 담배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이 이러한 위험 물질에 의존적이 되고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사전에 경고 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독 위험”(addiction risk)은 소비자가 모든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흡연을 했다는 담배 회사의 변론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등장했던 것이다.<sup>11</sup> 이에 1983년 마크 에델(Marc Edell)이라는 변호사는 치폴론 대 리겟 사 소송(Cipollone v. Liggett Group, Inc)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며 미국 담배 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sup>12</sup>

니코틴의 중독성 논의를 중심으로 나타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담배 소송의 새로운 전환은 한국 담배 소송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그 전략과 내용에 있어서 1980-90년대 미국에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논쟁들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법적 논의들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금연운동협회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배금자 변호사는 미국 담

<sup>9</sup> Donald W. Garner, “Cigarette Dependency and Civil Liability: A Modest Proposal,”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53:5 (1980), 1423-1465.

<sup>10</sup> M.A. Russell, “Tobacco Dependence: Is Nicotine Rewarding or Aversive?” *National Institute of Drug Abuse Research Monograph* 23 (1979), 100-122.

<sup>11</sup> Garner, “Cigarette Dependency and Civil Liability,” 1433.

<sup>12</sup> Cipollone v. Liggett Group, Inc., 683 F. Supp. 1487 (D.N.J. 1988); Allan M Brandt, *The Cigarette Century: The Rise, Fall, and Deadly Persistence of the Product that Defined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07), 319-355.

배 소송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쓴 논문과 함께 미국 담배 소송에 도입된 담배의 위해성 및 중독성 관련 증거와 이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논의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흡연자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논의하였다. 배금자는 미국 담배 소송의 주요 논리였던 제조물 책임법에 기 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가 유해성과 중독성을 지닌 위법한 제품이며, 나아가 과실(過失), 고의(故意)에 따른 불법 행위라는 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제거하고 위험을 방지할 의무, 이러한 위험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 책임, 그리고 유 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고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을 제기했던 것이다.<sup>13</sup>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1990-2000년대 나타난 한국 담배 소송에서 니코 틴의 중독성에 대한 논쟁들이 어떻게 흡연의 유해성과 이에 대한 책임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쟁점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이 원고와 피고에 의해 어떠한 양상으로 동원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한국 담배 소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할 기술이 부재했으며, 이러한 점을 반증할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14</sup> 이 논문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역동적 구성과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 과정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법정 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에 대한 서로 다른 논의들이 원고와 피고에 의해 어떻게 법정에서의 책임 문제를 판단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동원되었는지 비판적으 로 살펴볼 것이다.<sup>15</sup>

<sup>13</sup> Kum Ja Bae, "Applying American Tobacco Litigation Theories in Korea," (LL.M thesis,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1998); 배금자, "미국담배소송의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2 (1999), 1-10; 연기영, "한국담배소송에 적용될 이론: 담배의 위험성(결함)과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2 (1999), 11-27.

<sup>14</sup> "니코틴 함량 조작에 관한 증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면 담배에 중독된 것도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유현식, "담배 소송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39; 박진영, "한국 담배소송에서 과학 증거의 법적 재구성: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담배 연구문서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에 본 논문의 2절에서는 20세기 중·후반 중독에 대한 과학기술 지식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중독에 대한 신경 과학적 연구와 중독 물질의 생산자들이 어떻게 중독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와 그 소비, 혹은 치료 양상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분석한 과학사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독의 신경 과학의 역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담배 회사들이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약물에 대한 생리학적 중독(addiction)과 사회심리학적 습관화(habituation)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반면 이러한 구분은 공공 정책적인 차원에서 약물과 니코틴 중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생의학적 연구와 개입을 시도하였던 1970-80년대를 거치며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렇게 중독의 신경 과학 지식의 형성을 담배 산업과 소송, 규제와 공공 정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법정에서 논의되는 중독의 신경 과학 지식들은 단순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중독성에 대한 법적 논쟁은 오히려 담배를 비롯한 도박과 설탕 등 중독 산업의 확대와 이들의 지식 생산에의 개입과 지원, 그리고 이를 비판하며 나타난 중독 물질에 대한 소송과 규제의 부상,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생의학적 “약물과의 전쟁(War on Drugs)”이라는 정부의 공공 정책적 개입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자들의 지식 생산과 경합의 산물이었다.<sup>16</sup>

중독 산업의 발전과 이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과 규제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과학적 증거가 어떻게 법정에서 논의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 보다 폭넓은 지식 생산 차원에서의 정치경제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1970년 담배 소송을 담당했던 미국의 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적, 과학적 지식과 재원의 불균형 때문에, 법정 앞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항상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웃음거리(mock)” 자체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sup>17</sup> 이는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반면에, 피고들은 이미 광범위한 과학적·의학적 정보와 법적 자원과 금전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국 담배 소송을 연

<sup>15</sup> Sheila Jasanoff, *Science at the Bar: Law, Science, and Technology i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sup>16</sup> Nancy D. Campbell, *Discovering Addiction: The Science and Politics of Substance Abuse Research*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sup>17</sup> *Tbayr v. Uaggett & Meyers*, No. 5314 (W.D. Mich. Feb. 19, 1970), 33.

구했던 변호사, 규제 연구자, 의학자들은 담배 회사들이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들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과학적·의학적 연구들을 수행해 왔으며, 도버트 기준(Daubert rule)과 같은 여러 과학적 기준과 절차의 문제를 통해 각종 과학 및 의학 연구가 법정에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해 왔다는 점들을 밝혀냈다.<sup>18</sup>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사학자들은 담배의 위해성과 같은 유해 물질 소송, 화학과 제약 산업에서의 규제와 지구 온난화와 같은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영역에서 거대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지식 생산의 불균형과 그 기저의 정치경제학을 살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규제 과학에서 지식 생산의 불균형이 법과 규제, 공공 정책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9</sup>

본 논문은 중독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 경합을 역사적 맥락에서 위치시키는 동시에 과학적 증거의 정치경제학의 중요성을 지적한 과학기술과 법 분야의 연구들에 기반하여 한국 담배 소송에 도입된 신경 과학적 지식들과 이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신경 과학적 증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9년, 2005년 제기된 담배 소송들에 초점을 둘 것이다.<sup>20</sup>

<sup>18</sup> David Egilman, Joyce Kim and Molly Biklen, "Proving Causation: The Use and Abuse of Medical and Scientific Evidence inside the Courtroom: An Epidemiologist's Critique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Daubert Ruling," *Food and Drug Law Journal* 58 (2003), 223-250; Lissy Friedman, Richard Daynard, and Christopher Banthine, "How Tobacco-Friendly Science Escapes Scrutiny in the Courtroo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51 (2005), 516-20; Sara Guardino and Richard Daynard, "Tobacco Industry Lawyers as 'Disease Vectors,'" *Tobacco Control* 16:4 (2007), 224-228. 한국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와 법정 전문가 증인에 관련된 도버트 법 적용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은·박범순, "수문장의 딜레마: 도버트 기준 도입 이후 과학과 법과의 관계", 『과학기술학 연구』 15 (2015), 215-244; 이원복, "미국 전문가 증언 하용에 관한 Daubert 기준의 재고찰", 『법학논고』 58 (2017), 277-303.

<sup>19</sup> Robert N. Proctor and Londa Schiebinger, eds., *Agnology: The Making and Unmaking of Ignor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David Michaels, *Doubt is Their Product: How Industry's Assault on Science Threatens Your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Naomi Oreskes and Erik M. Conway, *Merchants of Doubt: How a Handful of Scientists Obscured the Truth on Issues from Tobacco Smoke to Global Warming* (New York: Bloomsbury, 2010).

<sup>20</sup> 금연운동협의회와 배금자 변호사가 1999년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04973 사건으로, 2007년 1심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2심 07나88883, 대법원 3심 2011다22092/23422 사건으로 2014년 4월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다. 2005년 금연운동협회 주도로 제기된 두 번째 개인 소송은 사건 번호 2005가합73599이다. 이 두 소송에서는 중독의 신경

1999년 소송은 금연운동협의회를 통해 모집한 소송 참가 지원자 60명 중 가족 병력과 환자의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담배가 폐암을 일으켰다고 볼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 6명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05년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명확하다고 판정되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제기한 것으로, 1999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증충적으로 다룬 사건이었다. 이에 3절에서는 위의 두 소송을 살펴봄에 한국 법정에서 니코틴 중독의 법적 쟁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4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한 미국 니코틴 신경과학 전문가 닐 베노위츠(Neal Benowitz)와 그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한다.

5절에서는 한국 담배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니코틴의 신경 과학을 법정에서의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무엇보다 중독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생물학적인 의존과 심리적인 의존 사이의 구분을 비판하거나 이를 동원하여 급성 중독과 자유 의지, 그리고 금연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은 법정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며 동원되었다. 결론에서는 담배 중독성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며 이 판결의 기저에 있는 신경 과학적 증거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흡연자를 자유 의지가 부족한 약물 중독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중독의 신경 과학: 생화학적 개입과 “두뇌의 질병”

한국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에서 중독 논의를 살펴보기 이전에, 중독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담배 산업과 중독 물질을 둘러싼 소송과 규제와 같은 공공 정책적 개입이 중독의 신경 과학 지식 형성과 그 진화에

---

과학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정보 공개 소송으로 인해 니코틴 조작과 한국인삼 연초원 관련 내부 문서에 초점을 두고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 중 중독의 신경 과학에 그 초점을 둘 것이다. 참고로 니코틴 조작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성규·김재형·김일순, “담배 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보건사회연구』 32 (2012), 461-484를 보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사학자 니콜라스 라스무센(Nicholas Rasmussen)에 의하면 20세기 초반부터, 특히 1930년대 이후 중독 현상에 대한 생리학적·약학적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약물, 특히 헤로인과 알코올에 대한 물리적 의존(dependency)과 강한 금단(withdrawal) 현상에 기반해 중독(addiction)을 정의하였다. 이 시기 중독에 대한 생의학적 모델을 제안한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 미시건 대학의 약학 교수였던 모리스 시버스(Maurice Seevers)였다. 그는 동물 실험들을 통해 모르핀(morphine)과 같이 생리학적으로 강력한 금단 현상을 측정·관찰할 수 있는 약물을 중독 약물로, 그렇지 않고 카페인이나 니코틴 같이 금단 현상이 크게 생리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약물들은 자극제(stimulants)라고 정의하며, 후자에 대한 중독은 심리적인 습관화(habituation)에 가까운 것이라 구분하였다.<sup>21</sup> 라스무센은 또한 시버스가 1951년부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물학적 중독과 사회심리적 습관화라는 구분이 보건 의료 정책에 전반에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로 인해 1964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고발한 미국의 보건총감 보고서(U.S. Surgeon General Report), 『흡연과 건강(Smoking and Health)』는 WHO의 보고서에 나타난 중독과 습관화의 구분을 인정하며, 담배에의 의존은 사회심리적 해악(psychotoxicity)을 가져오지 않는 습관화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2</sup>

중독을 생물학적인 의존과 심리적 습관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특히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가 중독 물질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했던 담배 회사들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담배 산업체들은 흡연의 지속이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회·심리학적인 의지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 활용하여, 금연은 의지의 문제라는 증거들을 만들며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sup>23</sup>

<sup>21</sup> Nicolas Rasmussen, "Maurice Seevers, the Stimulant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Addiction in American Biomedicine," *BioSocieties* 5:1 (2010), 105-123.

<sup>22</sup>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moking and Health,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sup>23</sup> White Cameron, John L. Oliffe, and Joan L. Bottorff, "Tobacco and the Invention of Quitting: A History of Gender, Excess and Will-Power," *Sociology of Health &*

하지만 1960년대 서구에서 약물 중독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생의학적 방법을 통해 개입·통제하고 치료하려는 공공 정책적 움직임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중독은 개인의 의지나 도덕적 타락의 결과로 간주되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약물 사용에 있어서의 통제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일례로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며 니코틴과 카페인과 같이 약물에 취하는 현상(intoxication)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제들 또한 생물학적 중독과 비슷한 생리학적인 의존을 유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점차 니코틴을 심리적 습관을 불러올 뿐이라며 이를 자극제의 한 종류로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점차 학계 전문가들에게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1962년 영국 왕립 의사회는 니코틴 금단 현상(nicotine withdrawal) 역시 다른 중독 약물과 동일하게 물리적인 의존을 불러일으킨다며 담배 또한 중독 물질의 범주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sup>24</sup>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특히 미국의 약물과의 전쟁을 통해 신경 과학에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면서부터 점차 생의학적 개입에 바탕하여 중독을 이해하고 치료하려는 스타일의 연구들이 나타났다.<sup>25</sup> 이러한 생의학적 연구들은 어떤 약물들이, 어떠한 생화학적 기제를 거쳐 두뇌에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생화학과 분자 생물학에 기반한 새로운 신경 과학적 연구는 무엇보다 생의학적 재현과 개입을 통해 두뇌의 신경-화학 물질 수용체(receptor)를 자극·규제함으로써 중독 상태를 제어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맥락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다.<sup>26</sup>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보다 폭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보다 명확하고 환원적인 생의학

---

*Illness* 35:5 (2013), 778-792.

<sup>24</sup>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London, *Smoking and Health: Summary of a Report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London on Smoking in Relation to Cancer of the Lung and Other Diseases* (London: Pitman, 1962); Virginia Berridge, "Medicine and the Public: The 1962 Report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the New Public Health,"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1 (2007), 286-311.

<sup>25</sup> John V. Pickstone, *Ways of Knowing: A New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sup>26</sup> Candace B. Pert, *Molecules of Emotion: Why You Feel the Way You Feel* (New York: Scribner, 1997). 20세기 분자 생물학에서의 생의학적 재현과 개입의 관계에 대한 글은 Lily E. Kay, *The Molecular Vision of Life: Caltech,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Rise of the New B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고.

적 개입을 추구한 “약물과의 전쟁” 전략이었다. 이처럼 중독의 신경 과학은 점차 두뇌의 화학 물질 수용체와 신경학적 신호 전달을 통해 중독 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흔히 “수용체 혁명(the receptors revolution)”이라 불리는 1970년대 신경과학의 생의학적화는 무엇보다 중독성 약물들로 인해 경험하는 금단 현상,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나타나는 중독과 각종 일탈 행위들을 점차 신경 과학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중독은 더 이상 “의지의 질병”이라는 틀이 아니라, 강력한 금단 현상을 나타내는 모르핀에서 지속적인 갈망(craving)을 불러오는 니코틴에 이르기까지 “두뇌의 질병”이라는 틀에서 생화학적 신경 과학에 기반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sup>27</sup>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중독에 대한 생의학적 연구와 개입에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은 또한 금연에 대한 신경 과학적, 약학적 연구를 촉진했으며, 이에 니코틴의 약리학적 특성과 중독성에 대한 지식 또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 담배의 위해성이 사회 전반에 알려지게 되면서 금연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히 수행되게 되었다. 이에 1970년대부터 흡연의 지속에 있어서의 니코틴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났으며, 정부와 제약 산업은 니코틴 금단 현상의 기저에 있는 생화학적이고 신경 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였다.<sup>28</sup> 특히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제약 산업체들과 담배회사들은 타르나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나 니코틴 대체품을 개발하려는 연구들을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니코틴 중독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를 개발하려던 회사들은, 흡연자들이 낮은 니코틴 함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담배를 소비하려는 보상 흡연(compensatory smoking)이 나타남을 발견했다. 또한 1970년대 말, 제약 회사들은 니코틴에 대한 의존이 흡연자들로 하여금 니코틴에 대한 절제할 수 없는 갈망(unruly desire, craving)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하고, 니코틴 대체 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y)을 개발하려는 연구를 수행했다.<sup>29</sup>

<sup>27</sup> Scott Vrecko, “Birth of a Brain Disease: Science, the State and Addiction Neuropolitics,”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23:4 (2010), 52-67.

<sup>28</sup> Mark Parascandola, “Tobacco Harm Reduction and the Evolution of Nicotine Depend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 (2011), 632-641.

<sup>29</sup> Mark Elam, “Pharmaceutical Incursion on Cigarette Smoking at the Birth of the Brain Disease Model of Addiction,” in Julie Netherland and Barbara Katz Rothman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Addiction* (Bradford: Emerald Group Publishing

신경 과학과 중독 연구의 생의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대에 이르면 많은 신경 과학자, 약리학자들이 니코틴 의존, 혹은 중독이 흡연의 지속에 있어서 중요한 생물학적 기반임을 인정했고, 1970-80년대 니코틴의 신경 과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1988년 니코틴의 중독성을 다룬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에 집대성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니코틴은 담배에 존재하고 있는 약물로서 중독을 유발한다(Nicotine is the drug in tobacco that causes addiction.)”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sup>30</sup> 그리고 이러한 니코틴 중독에 대한 신경 과학적, 약물학적 인식은 담배 소송의 법적 전략, 특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법정에서의 전략을 변화시켰다.

1980년대 초 미국의 변호사 에델은 1970년대 석면 소송을 담당하던 중,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발견들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니코틴이 중독성 있는 물질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흡연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기존 담배 회사의 법적 전략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70년대 보건 및 환경 소송의 증대로 불법 행위 소송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변화해 갔고, 이를 전담하는 여러 전문 법무법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식과 자원의 미비를 보완했다.<sup>31</sup> 일례로 위험한 제조물일 경우 그 제조물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이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즉 위험-효용 비율의 중요성이 몇몇 미국의 주들에서 중요한 불법 행위법(tort law)에서 판결의 한 축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담배가 질병을 야기하는 데다가 중독성이 있는 위험한 제조물이라면 이러한 상품이 그 위험을 능가하는 효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다.<sup>32</sup> 그의 소송은 미국 담배 소송 역사상 첫 승소를 거둔 사례로 기록되었다.

---

Limited, 2012), 53-75; Lynn T. Kozlowski and D. Adrian Wilkinson, “Use and Misuse of the Concept of Craving by Alcohol, Tobacco, and Drug Researcher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2:1 (1987), 31-36; Neal Benowitz, “Drug Therapy: Pharmacologic Aspects of Cigarette Smoking and Nicotine Addiction,”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9:20 (1988), 1318-1330.

<sup>30</sup>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Nicotine Addiction: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9.

<sup>31</sup> Richard J. Lazarus, *The Making of Environmental La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3. 한국의 담배 소송에서 중독 논의의 법적 쟁점들

역사적으로 한국 담배 소송에서 중독 논의는 미국 담배 소송에서 중독과 신경 과학 논의를 처음으로 법적 전략의 차원에서 사용한 사례인 1983년 마크 에델 소송과 그 결과에 일차적으로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에델의 소송은 1988년 심리에 착수되었으며, 배심원들은 1990년 미국 담배 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담배 회사에게 4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련된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독과 관련된 법적 논쟁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었다.<sup>33</sup> 일례로 소송을 통해 공개된 1972년 필립 모리스 사(Philip Morris)의 내부 문건에는 “담배 제품은 니코틴이다. 담뱃갑은 매일 니코틴을 공급하기 위한 보관 용기, 담배 연기는 최적의 니코틴 운반자이며, 담배는 최적의 연기 분배 장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담배 회사인 레이놀즈는 1972년 문서에서 “담배 산업은 제약업의 한 분야”라 하였는데 이는 담배 회사 스스로가 니코틴의 중독성을 높이는 데 여러 첨단 생물학적 지식과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제약 회사와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sup>34</sup>

한국에서의 담배 소송은 이처럼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이와 관련된 담배 회사 내부 문서의 공개를 통해 담배 회사가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과 패소, 그리고 미국 정부와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이라 불리는 담배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합의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담배 소송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막 귀국한 배금자 변호사가 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미국에서 벌어진 담배 소송의 법리를 근거로 이를 한국 법리에 적용시키고, 이 과정에서 논의된 중독의 신경 과학적 논의와 소송 중 공개된 미국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폐암 환자 및 가족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흡연과

<sup>32</sup> Marc Z. Edell, “Cigarette Litigation: The Second Wave,” *Tort and Insurance Law Journal* 22:1 (1986), 90-103.

<sup>33</sup> Brandt, *The Cigarette Century* (cit. n. 11).

<sup>34</sup> Stanton A. Glantz, *The Cigarette Pap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폐암 발병의 인과 관계, 담배 제조와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과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해 3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2005년 5월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이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배금자 변호사와 금연운동협의회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해외의 광범위한 과학적 지식과 그 법적 함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을 대비하여 해외 담배 회사들과 전략적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 소송을 동시에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sup>35</sup>

한국에서의 중독성에 대한 법적 논쟁은 금연운동협회가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999년, 그리고 2005년 소송 둘 모두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당시 보건과 담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금연운동협회가 의학 및 전문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1999년 제기된 소송을 담당한 배금자 변호사, 그리고 2005년 제기된 소송을 담당했던 정미화 변호사를 지원했다. 특히 소송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에 20세 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이 79.3%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WHO가 1997년에 조사한 각국 흡연율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은 70% 정도로 “세계 최고 흡연율”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 역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41.6%에 이르러 “선진국의 두 배”에 달한다며 담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sup>36</sup>

1999년 소송에서 원고는 제조물 책임상의 법리에 따라 니코틴의 중독성을 지적하며, 담배가 위법적인 제조물이라 주장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지만, 이 법 이전에도 당시 한국 법원의 판례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사상 일반불법행위 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례에 바탕하여 원고는 담배가 우선 제조물에 해당하며, 나아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인 담배인삼공사가

35 일례로 일본 담배(Japan Tobacco)의 경우 필립 모리스로부터 흡연과 건강, 그리고 금연 운동에 대한 대처를 구하는 광범위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Kaori Iida and Robert N. Proctor, “Learning from Philip Morris: Japan Tobacco’s Strategies Regarding Evidence of Tobacco Health Harms as Revealed in Internal Documents from the American Tobacco Industry,” *The Lancet* 363 (2004), 1820-1824.

36 원고소송대리인, “서울지방법원소장”, 사건번호 99가합104974호 (cit. n. 2).

다양한 첨가제, 그리고 필터와 종이 등을 사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제조물 책임법상 법적으로 중독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을 제기하는데, 이는 담배가 그 구조나 품질, 성능상 안정성을 결여하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니는 제조물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원고는 담배에 4,000여 종에 달하는 발암 및 독성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암을 비롯하여 심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원고는 담배 자체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것의 제조와 판매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sup>37</sup>

원고는 이어 제조물 책임법상 두 번째 중독에 관한 법적 이슈를 제기하는데, 이는 담배가 설계상 강한 중독을 유발하는 니코틴 성분을 흡입하게 하므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즉 담배의 보다 더 큰 결함은 담배가 이러한 흡연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중독 물질인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담배를 제조·판매 의도대로 소비자가 사용했을 경우 흡연자는 폐암, 심장병, 기관지염 등 각종 암과 질병을 겪게 될 위험이 있고, 나아가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며, 습관성, 의존성이 생기며, 금연을 하거나 담배를 줄이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발암 물질과 유독성 물질을 함유한 측면에선 담배가 이들 마약보다도 훨씬 더 해로운” 제품이라고 비판한다.<sup>38</sup> 특히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은 “헤로인과 코카인 수준의 강력한 만성 중독증을 일으키는 마약 중의 마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39</sup>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조한 담배가 이와 같은 중독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경고가 결여되어 있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경고 의무를 위반하고 이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지적한다. 피고가 중독성에 대해 함구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이를 기호품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1976년 이후 흡연 경고 문구를 담뱃갑에 삽입

<sup>37</sup> 같은 문서.

<sup>38</sup> 같은 문서.

<sup>39</sup> 같은 문서, VI. “담배 제조자로서의 제조물 책임”.

하였지만, 소송 당시인 1999년까지 흡연이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1989년부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경고 문구를 담뱃갑에 부착하게 되자, 담배 소비 감소를 우려해 담배인삼공사가 홍보책자 5만 부를 배포, “흡연과 건강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흡연율과 평균 수명에 아무 관계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금연 운동은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미국 편향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담배는 스트레스와 정신 균형 유지, 인간 관계에 촉매제 역할, 지방 재정 기여를 통해 사회적 정신 의학적 효용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였다.<sup>40</sup>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원고는 담배 제조자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려하지 않고 “담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원고는 또한 대한민국이 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 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담뱃세에 재정 수입을 기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합동으로 “흡연가를 만들고, 나이가 평생 중독자”가 되게 만들었다며, 국가 역시 많은 국민을 담배 중독자로 만들며, 이는 중독성에 대한 은폐 및 불충분한 경고와 규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sup>41</sup>

원고는 마지막으로 중독성과 관련된 법적 논쟁을 제기하면서 담배 제조사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오히려 중독성을 배가시키려는 고의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9년 12월 제출된 소장에서 피고 담배 제조자가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매연구소, 한국연초연구소 등 산하 연구소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담배의 중독성을 제거 내지 낮추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제조한 담배들은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이 미국산보다 높았으며, 1980년대 말까지도 여전히 미국산 담배에 비하여 타르, 니코틴 함량이 높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배의 해로운 물질을 줄이거나 낮추려는 노력 보다는 제조 과정에 여러 화학 물질을 가미하여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고, “담배의 니코틴 흡수율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노력했고,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자로 만들려고 의도”했기에 이는 고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42</sup>

<sup>40</sup> 같은 문서, VI. “담배 제조자로서의 제조물 책임”.

<sup>41</sup> 같은 문서.

<sup>42</sup> 같은 문서.

2005년 소송의 경우 이미 원고가 서울대 병원, 전남대 병원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판정을 받았고, 이것이 행정 법원에 인정되어 유족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다. 특히 2004년 11월 당시 발표된 서울대 의과대학의 담배 소송 감정서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조관행 판사는 그 내용이 “역학 연구의 결과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정도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의 폐암의 발생 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학적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사상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sup>43</sup>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감정서와 법원의 판단을 둘러싸고 여러 비판이 있었고 향후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2005년 원고의 경우 이미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기에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기존에 제기된 1999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주심 변호사들로 구성된 원고측 변호인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담배 회사의 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4</sup> 이에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은 사망한 원고가 박00 1963년 군에 입대하면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담배로 흡연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흡연에 관한 경고나 장기 흡연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원고 측은 오히려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장기 흡연을 유발하거나 국산 담배 장려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피고의 이러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니코틴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의존성)이 의학계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의존증이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제시했다. 특히 소장에서 변호인은 경찰관이었던 원고 박00가 1995년 몇 차례 금연 칩도 맛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등 금연을 시도했지만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43 국립암센터, “서울의대 교수 5인의 ‘담배 소송 감정서’내용이 정확히 알려지기 바람”, (보도자료), 2004. 11. 12, 담배소송자료. 이 감정서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조관행 판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1억 2천 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담배 소송 재판부의 교체가 있었다. “엘리트에서 ‘비리 판사’로 추락한 조관행씨” 『한겨레신문』, 2006. 8. 8.

44 공동소송대리인 (기존 공동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주심 변호사들), 금연운동협의회, “흡연 피해자 경찰 공무원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2005년 5월 9일, 담배소송자료.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으며, 결국 폐암 판정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경고했다.<sup>45</sup> 다른 한편으로 금연운동협회 측은 2002년 8월 이후 정보 공개 소송의 일환으로 여러 담배 회사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니코틴 조작에 관한 담배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려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sup>46</sup>

한국의 담배 소송에서 담배의 중독성, 특히 신경 과학적, 약학적 연구들에 대한 논의는 특히 닐 베노위츠(Neal Benowitz)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임상 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니코틴 전문가의 연구와 미국에서의 담배 소송 증언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금연운동협회의는 담배 소송 지원 차 2002년 베노위츠 박사의 미 담배 소송 증언 속기록을 2004년에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에 바탕하여 더 구체적으로 니코틴 중독성에 관련된 신경 과학적, 약학적 증거들과 이를 전략적으로 법정에서 사용할 방법들을 논의하기도 했다.<sup>47</sup> 베노위츠는 무엇보다 미 정부 차원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연구들을 총괄해서 작성한 1988년 보건총감 보고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니코틴 중독(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Nicotine Addiction)』 편집자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에 논의될 니코틴에 관한 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해 조언하고 집필해 줄 전문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글을 다시 쓰고, 이에 대해 전문가 리뷰를 거치는 등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988년 보건총감 보고서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며, 니코

45 원고측 소송 준비 요약, 사건번호 2005가합73599호, 담배소송자료.

46 원고측 소송 대리인, “준비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가합 73599호, 원고 임원 단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임동진, 이창구, 하민호, 정미화, 임주호, 정창훈 변호사), 2011년 4월. 담배소송자료. 담배 회사의 니코틴 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은 본 논문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는 것이기에 이를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원고 측은 미국의 유수 담배 제조사들이 니코틴 흡수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제를 첨가하는 등 니코틴 조작을 위해 여러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 연구 보고서들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의 첨가물 목록에 없는 니코틴 조작 물질이 최종 제품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 첨가물 목록의 첨가물도 니코틴 조작을 위한 물질로 밝혀진 사실”이 있기에, 피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역시 “니코틴 중독성 혹은 기호성 강화를 통한 담배 고객 유지와 판매 증대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7 닐 베노위츠 박사 증언 속기록 번역,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법원, Bullock v. Philip Morris 사건, 번호 BC 249171호 사건에서, 니코틴 중독에 관한 권위자 닐 베노위츠 박사(Neal Benowitz M.D)의 증언, 2002년 8월 23일, 담배소송자료.

틴은 담배에 존재하는 약(drug)의 일종으로 흡연을 지속시키는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배 예방과 소송과 관련된 공중 보건과 법적 접근들에 큰 변화를 촉구했다. 니코틴이 의존과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며, 담배의 중독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련된 약학적 그리고 행동학적 과정들(pharmacologic and behavioral processes)이 헤로인(heroin)과 코카인(cocaine)과 비슷하다는 보고서와 과학자 공동체의 지적은 자신의 의지만 강하다면 언제든지 금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담배 회사와 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미국 법원과 일반 대중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sup>48</sup>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담배 소송에서 도입된 베노위츠의 주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 4. 니코틴: 중독의 사이클과 담배의 본질

한국의 법정에서 니코틴의 신경 과학과 그 중독성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논쟁에 동원된 니코틴 전문가 베노위츠가 어떠한 과학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0년대 미국의 담배 소송 자료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증언들을 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담배 소송의 원고들은 법정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하나의 사실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특히 베노위츠의 증언들을 법정에서 사용했으며, 이를 위해 그의 논문과 2002년 미국 법정 증언, 1988년 보건 총감 보고서, 2008년 필립 모리스 사 등의 담배 회사들을 피고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진행된 앵글 프로제니(Engle Progeny) 소송의 자료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했던 증언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특히 2005년 소송에서 피고측 또한 베노위츠의 증언들의 일부를 사용하여 원고가 법정에서 과학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던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기도 했고, 그의 주장이 금연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며, 담배 중독의 심각성을 부인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sup>49</sup>

<sup>48</sup>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cit. n. 29).

<sup>49</sup> 베노위츠의 자료 조사(deposition) 과정의 속기록은 다음과 같이 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에서 다음과 같이 4개의 문서들로 보관되어 있다 (인용은 UCSF Guideline에 따름, 이하 Deposition of Benowitz, Vol. 1-4, 2009로 표기) Deposition of Neal Benowitz, MD in Engle Progeny Cases

베노위츠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기된 여러 담배소송에서 재판 이전 자료조사 과정이나 법정 심문에서 자신을 약물에 관한 전문가로서, 무엇보다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흡수되어 퍼지고, 생체 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며 배출되는지를 다루는 약물 동태학(Pharmacokinetics) 분야를 중심으로 니코틴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해온 니코틴 중독에 대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니코틴의 체내 흡수와 그 생물학적 작용에 대한 사실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논의했다. 법정에서 먼저 베노위츠는 자신의 연구와 전문적 지식에 기반해서 담배 내의 니코틴이 흡연을 통해 어떻게 인체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서술하며 전문가 증언을 시작한다. 그는 담배는 그 연소 시 에어로졸에 포함된 타르 상태의 물질들을 배출하며, 그 안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1개비 당 평균적으로 1-1.5 밀리그램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개를 피울 때 8번의 니코틴 흡입을 하며, 이렇게 폐로 흡입된 니코틴은 15-20초 이내에 빠르게 혈관을 통해 두뇌를 비롯한 신체의 여러 곳으로 순환되며, 2시간 이내에 50% 정도가 신체 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베노위츠는 특히 미국에서 거대 담배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흡연을 통한 니코틴의 두뇌 도달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니코틴 중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중독 약물의 경우 약물이 두

---

Tobacco Litigation: Pertains to All Cases; Volume 1. 2009 January 15. Depositions and Trial Testimony (DATTA).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docs/ygkko191> (2019. 10. 12 접속. 이하 동일); Deposition of Neal Benowitz, MD in Engle Progeny Cases Tobacco Litigation: Pertains to All Cases; Volume 2. 2009 January 15. Depositions and Trial Testimony (DATTA).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docs/pgkko191>; Deposition of Neal Benowitz, MD in Engle Progeny Cases Tobacco Litigation: Pertains to All Cases; Volume 3. 2009 January 16. Depositions and Trial Testimony (DATTA).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docs/qgkko191>; Deposition of Neal Benowitz, MD in Engle Progeny Cases Tobacco Litigation: Pertains to All Cases; Volume 4. 2009 January 16. Depositions and Trial Testimony (DATTA).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docs/rgkko191>; 베노위츠가 행한 법정 증언 속기록은 다음과 같다(이하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Trial Testimony of Neal L. Benowitz, M.D., May 19, 2009 [p.m.], IN RE: ENGLE PROGENY CASES TOBACCO LITIGATION; Pertains To: MARTIN. 2009 May 19. Depositions and Trial Testimony (DATTA).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docs/qsblo154>

뇌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두뇌에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폐를 통해, 혹은 주사를 통해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약물들이 혈관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두뇌에 전달되는 “동맥 스파이크(arterial spike)”가 발생할 때 약물 사용자는 이러한 경험이 주는 강력한 정신적 쾌락 효과에 중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대부분의 중독 물질들은 이러한 두뇌 유입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만족을 주고, 이에 사람들이 이러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중독된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니코틴이어도 이를 경구를 통해 신체에 유입될 경우, 체내 도달 시간이 30분에서 2시간 정도이며, 패치를 통한 경우 4-6시간에 걸쳐 서서히 두뇌의 니코틴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니코틴의 경우 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50</sup>

그렇다면 이처럼 단시간 내에 고농도로 축적된 니코틴은 두뇌에서 어떠한 신경 전달 과정을 거쳐 흡연자를 쾌락으로 이르게 하며, 이를 통해 중독적 흡연을 불러 일으키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두뇌의 신경 물질 수용체에 대한 신경 과학적 논의를 동원한다. 그는 우선 담뱃잎에 존재하고 있는 니코틴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 화학 물질이라고 지적한다. 신경 과학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 니코틴이 흡연을 통해 빠른 속도로 두뇌로 전달되면, 대뇌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기분(mood)과 행동(behavior)을 조절하는 호르몬 물질들, 특히 감정과 쾌락에 관여하는 도파민(dopamine)을 배출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도파민은 흡연자에게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니코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즐거움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며 지루함을 견디고, 집중력을 높이거나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흡연의 본질은 니코틴은 통해 두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지속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sup>51</sup>

베노위츠는 니코틴이라는 중독 물질의 또다른 문제로 이에 대한 두뇌의 내성

<sup>50</sup> Written Direct: Neal Benowitz, M.D., US v. PM, 99-cv-02496 (D.D.C.)(GK) (cit. n. 48), 17-21;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1 (cit. n. 48), 92-94.

<sup>51</sup>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1 (cit. n. 48), 95-106; and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cit. n. 48), 1403-1413.

(tolerance)의 발달과 이로 인해 지속적인 흡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즉, 흡연자가 즐거움과 고양, 쾌락을 위해 두뇌에 니코틴을 자주 노출시킬수록, 뇌가 이에 적응하여 적은 양의 도파민만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흡연자의 경우, 흡연을 통해 니코틴이 유입된 상태일 때에만 뇌의 도파민 수준이 정상적인 농도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니코틴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두뇌에서는 정상 이하의 도파민이 생성되며 이에 뇌의 인지 상태가 저하되고, 기분 저하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니코틴 금단(withdrawal)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흡연자는 다시 니코틴을 찾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니코틴 중독이 지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베노위츠는 이러한 금단 현상은 결국 매일, 흡연 간격마다 일어나며 흡연자가 지속적이고 중독적으로 담배를 찾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니코틴 사이클, 즉 중독의 사이클(nicotine cycle, or addiction cycle)”이라 지칭한다.<sup>52</sup>

베노위츠는 한 법정 증언에서 “그렇다면 왜 담배에서 니코틴을 제거하지 않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에 대답하며 담배와 흡연의 본질은 니코틴에 있으며, 담배는 이 전달 수단을 위한 약품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노위츠는 일단 사람들이 니코틴 없이는 결코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흡연자는 니코틴이 주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를 피우며, 보다 큰 문제는 이 물질이 여러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중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흡연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이가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직접 주사하는 것 이외에 니코틴을 인체에 투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담배 회사는 연기를 폐로 흡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인 처리와 첨가물을 추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회사들은 한 개비의 담배가 균일한 정도로 중독에 도달할 수준의 니코틴을 함유하게 하기 위해 담뱃잎을 재처리하기도 하며, 폐에서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활용해 산성도를 조절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담배는 기본적으로 흡연자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중독된 흡연자의 신체로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침단 기기라는 것이다.<sup>53</sup>

베노위츠는 몇 달 후 열린 법정 진술에서 제조물로서의 담배의 본질은 니코틴이며, 이의 중독성 때문에 담배가 더 위대한 제품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sup>52</sup>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2, 116-126 (cit. n. 48), 126.

<sup>53</sup> Ibid., 174-178.

그는 “담배 산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약 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담배 제품은 니코틴을 전달하며 여러 생리학적 효과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약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담배 회사 레이놀드(R.J. Reynolds)의 문서를 인용하며, 담배 회사는 이미 니코틴 전달이 흡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54</sup> 나아가 그는 무엇보다 니코틴 자체가 질병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을 계속 지속하게 함으로써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해 물질들에 흡연자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위협적인 역할을 행한다고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니코틴 중독이야말로 흡연-관련 질병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니코틴이 담배에 없었다면, 니코틴을 얻기 위한 중독 흡연이 없었다면, 흡연과 관련된 암과 심장병, 그리고 폐병이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할 정도였다.<sup>55</sup> 이제 그의 이러한 니코틴 중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정에서 어떻게 원고와 피고에 의해 소개되고, 논의되고, 반박되는지를 살펴보자.

## 5. 한국 법정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과 금연의 문제

한국 법정에서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논의는 담배가 위법한 제조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논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니코틴 중독에 관한 논쟁은 이미 미국의 담배 소송에서 이러한 논의가 한 차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이나 진행될 수 있었지만, 반면 미국 법정에서 논의된 니코틴 중독에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동원될 수 있었다. 원고 변호인은 무엇보다 니코틴에 대한 최근의 신경 과학 연구들이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니코틴의 중독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베노위츠를 비롯한 미국의 중독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특히 니코틴 중독에 관한 최근의 신경 과학의 보편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는 니코틴 중독에 대한 신경 과학적 증거가 원고 개개인에 필연적으로 적용될 이유는 없으며, 무엇보다 니코틴 중독이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피고측 변호인은 한국의

<sup>54</sup>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cit. n. 48), 1430.

<sup>55</sup> Ibid., 1403-1407.

원고가 흡연을 행했을 과거의 중독과 의존에 대한 지식 수준, 금연에 대한 사회 통념 등 시간적이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신경 과학적 지식의 잣대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시공간을 넘어 지역적인 특수성과 과거의 사회상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 법정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이 동원된 방식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법정에서의 책임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독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생물학적인 의존과 심리적인 의존에 대한 구분을 비판, 혹은 이를 동원하여 각자 급성 중독과 자유 의지, 그리고 금연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며 법정에서의 흡연자와 담배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논의했던 것이다.

#### 1) 니코틴 중독: 약물에의 통제의 상실 대 정신적 의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나타난 니코틴 중독에 관한 논쟁의 근본적인 대립은 먼저 중독의 정의와 그 기저에 있는 신경 과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나타났다. 우선 원고 변호인 측이 주장한 니코틴의 중독에 대한 신경 과학적 정의는 1999년 제기된 소송의 6명의 원고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종합 준비 서면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원고는 우선 “중독(addiction)”이라는 용어가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심리적, 혹은 신체적 위해가 있음에도 이를 강박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이 용어에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전문가들은 보다 중립적인 “의존(depend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모두 의학적인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56</sup> 원고는 이에 “니코틴 의존성은, 담배 회사가 마약 장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흡연자가 니코틴 의존증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의학적 판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7</sup>

<sup>56</sup> 윤수정·김대진, “니코틴 의존의 신경생물학적 이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6:5 (2005), 351-360

<sup>57</sup> 원고측 소송대리인, 종합준비서면, 사건번호 99가합104973, 2006년 12월 21일 제출, 26쪽, 담배소송자료.

원고는 특히 니코틴의 중독 과정이 마약 중독 패턴과 유사한 임상적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 흡연자에게는 결국 “약물을 중단하지 못하는 신체적 의존(physical dependence)이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긴장 및 감정적 불편 감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도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sup>58</sup> 원고는 1988년 미 보건총감 보고서와 그 외 관련된 과학 연구들, 그리고 미 법정에서 베노위츠가 증언한 자료들을 인용하며, 니코틴이 흡연자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중독성 활성 물질이며, 이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켜 뇌의 보상 경로를 자극하여 쾌감을 유지시키며, 이러한 두뇌 자극의 지속을 위해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러한 니코틴 중독의 이해에 기존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의존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기보다는, 이 중독의 본질이 “약물 사용에 있어서 통제를 상실”한다는 점에 있다는 베노위츠의 증언들을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니코틴은 매우 강한 중독성을 띤 약물”이라 주장한다.<sup>59</sup>

반면 피고 변호인은 의존성이 크게 신체적 의존성과 정신적 의존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신체적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생리적 기능 때문에” 약물을 추구하게 되며, 이때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 의존성이 나타나 그 결과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금단 증상(이탈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떤 약물은 신체적 의존성을 형성하지 않지만 그 사용자에게 “쾌감을 유지하려는 강한 욕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시 약물을 복용하려는 “정신적 의존, 즉 습관(habituatation)”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신체적 의존과 정신적 의존을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다.<sup>60</sup>

## 2) 니코틴 중독: 급성 중독과 자유 의지 사이에서

한국 담배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변호인은 중독의 정의와 그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하여서 의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기했다. 우선 원고 변호인은 담배 중독의 본질이 니코틴이라는 약물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잃

<sup>58</sup> 같은 문서, 86.

<sup>59</sup> 같은 문서, 83-84.

<sup>60</sup> 피고측 소송대리인, 사건번호 99가합104973, 준비서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에 관하여,” 2005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제출, 8. 담배소송자료.

는 것이고, 이에 이러한 위법한 제품을 제조한 담배 회사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변호인은 무엇보다 중독을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정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과 책임의 관계를 구성했던 담배 회사들의 전략을 동원했다. 이에 의하면, 니코틴 중독은 흡연자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급성 중독(intoxication)”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흡연의 지속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흡연자에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취하지 않는” 니코틴 중독의 특징을 강조하며, 특히 흡연자가 급성 중독 현상이나 정신 독성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니코틴 사용에 대한 통제를 잃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니코틴이 결국 다른 마약들에 비해 더 강력한 중독 물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니코틴 사용이 주의력이나 일상적인 감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담배의 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하루 평균 20회를 투여하는 데 한번이라도 중지하는 경우 대부분의 흡연자는 담배를 찾아다니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sup>61</sup>

원고는 또한 니코틴 중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약물의 사용에 대한 통제의 상실을 들며, 그런 의미에서 니코틴이 다른 약물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 그 사용이 다른 중독 물질과 달리 흡연자를 취하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인 베노위츠의 증언을 강조한다. 베노위츠는 사실 1960년대까지도 중독에 대한 정의는 헤로인과 알코올 모델에 근거해서 내려졌으며, 이는 중독되기 위해서는 “취해야 했고(intoxicate), 그래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이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 감퇴되어야” 중독 물질로 간주되었던 중독 신경 과학의 역사를 언급한다. 이러한 중독에 대한 이해 하에서 니코틴은 급성 중독을 보이지 않았기에 1960년대까지도 중독 물질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니코틴 중독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으며, 이로 인해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중독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역설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니코틴을 더 중독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sup>62</sup>

61 원고측 소송대리인, 종합준비서면 (cit. n. 56), 110.

62 닐 베노위츠 박사 증언 속기록 번역 (cit. n. 45); 원고측 소송대리인, 사건번호 1999가합 104973, 1심에 제출된 갑호증, 갑제113호증의 1, 니코틴 중독성에 관한 전문가 증언록, 담배소

피고 변호측 세종의 전략은 특히 미국과 일본의 담배 소송에서 나타난 피고 담배 회사들의 중독에 대한 법적 전략, 즉 신체 의존성과 정신 의존성의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니코틴의 신체적 의존성의 정도는 “헤로인, 몰핀 등의 마약이나 알콜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니코틴 중독이 사회심리적 해악, 즉 흡연을 지속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니코틴 중독으로 심리적 질병을 겪는 것과 같은 “정신 독성”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3</sup> 이와 동시에 니코틴은 코카인이나 모르핀과 같은 중독 약물이 가져오는 “현실적 문제”, 즉 니코틴 중독자가 “그 약물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그 약물만이 관심사가 되어 다른 사회 생활에 방해”가 될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니코틴의 경우 이러한 “정신 독성”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동반한 법적 규제를 받아온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64</sup>

신체적 의존과 정신적 의존을 구분하고, 니코틴은 결국 “심리적/정신적” 의존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은 종종 흡연자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문제시하는 암시를 동반하며, 이를 통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흡연자 개개인에게 흡연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했다. 피고 변호인은 니코틴에는 신체적 의존성이 카페인의 그것과 유사해 “극히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분명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니코틴의 정신적 의존성도 “알코올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흡연자의 흡연 의지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5</sup> 게다가 니코틴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의존성”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다른 의존 약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정신 독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니코틴에 흡연자 자신의 의사 및 노력에 따른 금연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독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6</sup> 즉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의 정도는 “흡연자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 정도이며, 이에 지속적인

송자료.

<sup>63</sup> 피고측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cit. n. 57), 9-10.

<sup>64</sup> 같은 문서.

<sup>65</sup> 같은 문서, 10-11.

<sup>66</sup> 같은 문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사에게 귀속된다기보다는 금연에의 의지가 부족한 개별 흡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sup>67</sup>

2005년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보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소송에서 급성 중독, 혹은 취함에 대한 필립 모리스 측 변호사 윌리엄 게러허티(William P. Geraghty)가 베노위츠를 비판하며 동원했던 신경 과학적 논의와 법적 전략들을 동원하고 있다. 필립 모리스의 변호사는 우선 1988년 보건 총감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보고서가 니코틴을 알코올, 코카인, 그리고 헤로인과 같은 중독 물질 범주에 추가시켰지만, 니코틴은 이들 물질들과 다르게 의식 수준, 인지, 지각, 감정, 행동 등 정신 심리적 기능에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급성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니코틴이 중독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판단과 의지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알코올이나 코카인과 같은 다른 중독 물질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게러허티는 나아가 베노위츠에게 “니코틴은 흡연과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니코틴은 흡연자의 이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때문에 흡연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흡연자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점을 확립시키려 했다.<sup>68</sup>

이러한 시도에 대해 미국 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이 니코틴의 중독성에 관한 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노위츠는 그럼에도 여러 부연 설명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며, 오히려 니코틴이 여러 고양 및 즐거움을 주는 효과와 더불어 “취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지속적으로 중독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몇 달 후 법정 증언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니코틴이 “여러 중독 약물 중에서 가장 중독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9</sup> 한국 담배 소송에서 원고는 이러한 증언과 함께 미국에서 정신 의학 교과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책에서 니코틴 중독을 담당했던 존 휴즈(John Hughes)의 “니코틴 관련 장애(nicotine-related disorder)”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니코틴이 마약과 알코올과 같은 신체적 작용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급성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흡연자들이 매일 지속적인 양의 니코틴을 흡

67 같은 문서

68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3, (cit. n. 48), 425-429.

69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cit. n. 48), 1600.

입할 수 있고, 따라서 니코틴 의존에 처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70</sup>

### 3) 니코틴 중독과 금연, 그리고 법적 책임

한국의 담배 소송에서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은 니코틴 중독에 있어서의 흡연자의 자유 의지와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1999년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는 특히 피고 측이 중독을 생물학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구분하고, 니코틴은 정신적 의존을 일으킬 뿐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금단 현상에 대한 신경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했을 때 신체적 및 심리적 의존 증상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집중력 저하, 심박동수의 저하와 같은 니코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금단 현상을 겪게 되면서 “뇌에 기억되어 있던 흡연 후의 쾌감이나 이완감 등이 회상”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며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을 강조한다.<sup>71</sup> 또한 니코틴 의존자가 장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뇌 보상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흡연으로도 강력한 뇌 보상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연 후 수 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하면 재발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원고는 이러한 신경 과학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실제 니코틴의 중독성을 극복하는 비율은 5% 미만이고, 아무런 치료법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의 90%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흡연을 재개한다는 통계들을 제시하고 있다.<sup>72</sup>

원고는 니코틴 금단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유 선택이 아닌 약물 의존 행위로서” 흡연 행위와 니코틴 중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은 신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중독된 욕구에 의해 생리적으로 그 약물을 섭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행동은 ‘자유 선택(free choice)’에 의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선택에 의한 행동은 자신의 과거 경

<sup>70</sup> 원고측 소송대리인, 증거물, 갑제240호증, 사건번호 2005가합73599, 담배소송자료. John R. Hughes, “Nicotine-related disorders,” in Benjamin J. Sadock and Harold I. Kaplan 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sup>th</sup> Edition*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1999), 1033-1038.

<sup>71</sup> 원고측 소송대리인, 종합준비서면 (cit. n. 55).

<sup>72</sup> 같은 문서, 88-89.

험이나 지식, 이해로부터 나온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흡연의 지속의 경우 약물의 효과에 대해 “강한 의존성을 가진 신체적 반응”에 의한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3</sup> 이를 통해 원고는 니코틴이 다른 중독 물질과 다르게 니코틴이 흡연자의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만 있다면 금연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한다.<sup>74</sup>

2005년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는 미국 앵겔 프로제니(Engle Progeny v. Philip Morris) 소송에서 베노위츠의 증언을 비판했던 필립 모리스 측 변호인의 논의와 법정 공방을 동원하고, 특히 금연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한국의, 특히 피고들이 담배를 피웠던 시기의 사회 통념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75</sup> 우선 피고의 서면은 미국에서 진행된 프로제니의 소송에서 베노위츠가 법정의 자료 조사에서 행한 증언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특히 피고는 필립 모리스 변호인 게리히티가 니코틴 중독의 생물학적 기저에 있는 신경과학적 지식에 대한 베노위츠의 증언에 대해 심문하며 비판한 점에 착안하여 베노위츠의 증언 자체조차도 니코틴의 중독성이 금연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소송에 제출된 피고 측 서면에서 인용된 베노위츠의 증언은 니코틴 중독 기저에 있는 생물학적 변화들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을 제시하며, 금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신경 과학 연구에 의하면 두뇌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물학적으로 지속적인 니코틴 흡입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흡연자가 극복하기 힘든 니코틴 중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우선 니코틴이 두 가지 차원에서 두뇌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니코틴 수용체가 증가해 니코틴 내성으로 인한 자극의 감소를 보완해주는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신경학적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흡연을 멈춘 후 2-3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변화이다. 또 다른 차원의 변화는 지속적인 신경계의 자극과 기억으로 인해 두뇌에 새로운 연관과 신경-보상 회로(pathway)들이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는 두뇌에 영속적인(permanent)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극과 기억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를 겪은 두뇌는 지속적으로 니코

73 같은 문서, 87-88.

74 피고측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cit. n. 57).

75 피고측 소송대리인, 손해배상(기) 피고 준비서면 <의존성 관련 반박>, 사건번호 2005가합 73599 2011년 10월 27일, 담배소송자료.

틴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금연을 하더라도 거의 평생 니코틴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금연 이후에 2주, 혹은 몇 년이 지나도 다시 흡연을 하는 니코틴 중독자들의 행태를 베노위츠는 지적한다. 그가 증언하듯 두뇌의 영속적인 변화 때문에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once an addict, always an addict)”이고, “금연을 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흡연을 하는 꿈을 꾸는 등 ... 평생 동안 다시 흡연에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sup>76</sup> 그는 이러한 증언을 통해 “니코틴은 자유 선택을 저해한다(Nicotine undermines free choice)”라는 결론을 내린다.<sup>77</sup>

미국의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를 변호했던 게러허티는 니코틴의 중독성에 관한 베노위츠의 주된 주장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연의 가능성과 같이 흡연자의 자유 의지와 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던진다. 게러허티는 “뇌의 수용체가 금연 후 수주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러한 니코틴 수용체 수준이 “3-12주 후 비흡연자 수준으로 하향 조절”된다는 답변을 얻어낸다. 하지만 그는 베노위츠가 지적한, 니코틴이 보상 회로를 통해 어떻게 두뇌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78</sup> 오히려 그는 “지속적인 흡연이 두뇌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점이 금연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질문이나, “니코틴으로 인한 두뇌의 변화가 담뱃갑에 있는 경고 라벨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흡연자가 강력한 자유 의지를 통해 금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니코틴 중독에 관한 베노위츠의 주장을 가능한 한 법정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피고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은 KT&G에 대한 변호 과정에서 위의 미국 소송에서 나타난 베노위츠의 증언을 인용하며, 결국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라 할지라도 “뇌의 수용체가 금연 후 수 주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중독은 신체적 의존보다는 심리적 의존에 가까운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심리적 의존을 극복하는 데에 “니코틴은 흡연과 관련된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sup>76</sup>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2 (cit. n. 48), 135; and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cit. n. 48), 1416-1422.

<sup>77</sup>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2 (cit. n. 48), 155.

<sup>78</sup> Deposition of Neal Benowitz, Vol 3 (cit. n. 48), 385-394.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는데 생물학적 장애는 극히 미미하고 결국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니코틴의 중독성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담배 제조사가 아니라 흡연자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피고 측은 이를 바탕으로 담배가 위법적인 제조물이 아니며, 때문에 담배 제조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히려 니코틴의 중독성이 매우 미약함에도, 금연할 자유 의지가 부족한 흡연자에게 그 폐해에 책임이 있다고 암시하며,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추구한 도덕적 미약자로 그리고 있다.<sup>79</sup>

또한 KT&G 변호인은 게리허티의 니코틴 중독의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차용하면서 니코틴이 다른 중독 물질과 다르게 급성 중독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때문에 흡연자의 “이성과 의지와 판단력을 결코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는 “단순히 각성을 위해 졸릴 때 커피를 마시듯 니코틴 의존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가끔 흡연을 즐기는 ‘간헐적 흡연자(chipper)’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사례가 금단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니코틴의 고양 효과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한다.<sup>80</sup> 피고는 또한 1988년 미국의 보건 총감 보고서의 수치를 근거로 “모든 흡연자 중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은 90-9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통계는 “인간의 의지가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즉 “흡연자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으므로 니코틴의 의존성은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81</sup> 피고 측은 결국 니코틴이 결국 개인의 자유 의지를 저해하지 않으며, 때문에 흡연자 스스로 선택하여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 흡연으로 인한 책임 역시 니코틴을 전달하는 담배를 만든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담배를 선택한 흡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sup>82</sup>

이처럼 담배 소송에서 금연의 정의와 그 가능성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79 피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준비서면 <의존성 관련 반박> (cit. n. 72), 3.

80 같은 문서, 7.

81 같은 문서, 8.

82 같은 문서, 4.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책임은 중독성 있는 담배를 제조한 담배 회사가 아니라 그 위험에도 쾌락을 추구하고 비이성적으로 이를 사용한 중독 흡연자에게 전가된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자기 의지가 박약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담배 회사에게 전가시키려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으로 낙인(stigma) 찍히게 된다. 이에 베노 위츠는 법정에서 한 증언에서 “금연만큼 쉬운 것은 없다. 나는 수백 번 금연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Quitting smoking is easy. Have done it hundreds of times.)”라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만일 흡연자가 금연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고 그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금연하려 시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금연의 실패가 자신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흡연이 중독에 의해 지속되고, 이러한 중독에 생리학적이고 물리적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금연 시도의 실패가 그들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흡연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을 것이다. 금연에서의 실패가 그들의 의지 박약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sup>83</sup>

그는 법정에서 니코틴의 중독성을 부정하고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금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담배 회사들이 결국 중독물 제조와 더불어 흡연자에게 이중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역설한다.<sup>84</sup>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니코틴 중독의 신경 과학이 법정에서 담배 제조사의 책임 문제에서 흡연자의 자유 의지에 관한 논의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담배 제조사들은 여러 과학적, 법적 논리들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심리적, 도덕적 문제 제기를 통해 이들을 낙인찍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담배 소송의 원고 변호인은 담배의 중독에 대한 변론을 마치면서, 결국 피고의 주장, 즉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고, 니코틴은 담배의 본질적 성분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를 알고 흡연한 것은 전적으로 원

<sup>83</sup> Trial Testimony of Neal Benowitz (cit. n. 48), 1600.

<sup>84</sup> Ibid., 1495.

고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이는 담배 회사가 지속적으로 니코틴 중독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의존되어 계속 흡연을 하게 되고, 폐암에 걸린다는 것을 알면서 그 위험을 모두 감수하였다고 비난”받으며 흡연의 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sup>85</sup>

원고는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에서 “담배 회사들은 흡연에 의해 야기된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위험성의 범위,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위험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흡연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sup>86</sup> 원고는 담배의 의존성에 대해 수많은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담배 회사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담배의 의존성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서도” 흡연을 한 이들에게 자유 의지가 부족하다며 흡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sup>87</sup> 원고 측은 한국의 법원이 “미국연방대법원이 고뇌 끝에 내린 담배 소송 승소 판결들을 참고하셔서” 담배 소송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호를 마무리했다.<sup>88</sup>

## 6. 나가며

200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8호 법정에서 민사 13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7년 4개월 동안 관심과 논란 속에 진행되었던 국내 담배 소송 1심 재판에 대해 원고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판결문은 우선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하여 담배라는 제품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과 유해 성분은 피고들에 의하여 “첨가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니코틴이 각성 효과, 스트레스 및 불안의 감소 등 담배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 담배라는

85 원고측 소송대리인, 종합준비서면, 사건번호 99가합104973 (cit. n. 55), 92.

86 같은 문서, 93; 원고측 소송대리인, 사건번호 99가합104973, 갑제 97호 중의 1, 2 (Henley v. Philip Morris, Inc., et al., 사건), 담배소송자료.

87 원고측 소송대리인, 종합준비서면 (cit. n. 55), 92.

88 같은 문서, 127.

제조물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설계 수단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sup>89</sup> 또한 담배인삼공사가 1960년대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르, 니코틴 함량이 미국산 담배의 그것보다 높았고, 1970년대부터 제조 담배의 타르, 니코틴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 여전히 미국산 담배에 비하여 타르, 니코틴 함유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sup>90</sup>

다른 한 측면으로 재판부는 담배의 니코틴 의존과 관련하여 이 제조물이 위법인지에 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니코틴 의존에 대해 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니코틴 의존의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아편류, 암페타민 등에 비하여 신체적 의존의 정도가 약하다고 봄이 상당하”라고 지적했다.<sup>91</sup> 또한 흡연자가 금연할 경우에도 “불쾌 등의 증상이 자각”되기는 하나 헤로인 중독에서와 같은 강한 금단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성인 흡연율이 미국의 경우 1965년 40%에서 1987년에 29%까지, 그리고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이 1980년 79.3%에서 2006년 49.2%로 감소한 점, 그리고 미국의 경우 고학력 백인 군에서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이성적 판단과 자유 의지가 있다면 흡연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니코틴이 다른 약물과 다르게 “심각한 행동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 니코틴 의존을 이유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이며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sup>92</sup>

1999년 제기된 담배 소송을 심리한 조경란 부장 판사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측은 니코틴 중독의 신경 과학적 정의를 이용한 생물학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의 구분 및 이에 기반을 둔 흡연자에 대한 묘사를 통해 흡연자들을 자기 의지가 박약하고 쾌락을 추구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sup>89</sup>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 조경란, 사건번호 99가합104973 판결문, 28.

<sup>90</sup> 같은 문서, 46.

<sup>91</sup> 같은 문서, 43.

<sup>92</sup> 같은 문서, 42-43.

무책임한 자들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판결 후 인터뷰에서 조경란 판사는 “아버지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던 골초이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본 소송의 판결에 있어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양심이 아닌 법률의 양심”에 따랐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흡연의 시작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대부분이 흡연 시작 당시 미성년자로, 그들이 흡연을 시작할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사이에 “미성년자 격인 금지법”을 어긴 “불법 흡연”을 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남편 또한 흡연자이고, 담배를 끊기를 바라지만, “의지로 끊기를 바라지 금연 보조제 등을 사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담배의 중독성은 개인 의지로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이며, 의지가 박약하여 금연하지 못하는 중독자들에게 담배 회사가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sup>93</sup>

한국 사법부의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2005년 제기된 담배 소송에 대한 2011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니코틴 중독성에 관하여 이는 중독이라기보다는 “의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니코틴의 심리적·신체적 의존성은 알코올보다 약하고 카페인에 유사한 정도일 뿐, 자유 의지에 따른 금연 결심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의존증은 없기 때문에, 흡연 행위는 의존증에 의해 유발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니코틴 의존이 1994년에야, 그것도 카페인 의존과 동등한 수준의 질병으로 분류된 점, 그리고 베노위츠 박사의 증언, 즉 “뇌의 수용체가 금연 후 수주가 지나면 정상으로 되돌아오며 니코틴이 흡연과 관련된 위험을 인지 및 이해하며 평가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흡연자 중 90-95%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에 성공한다는 점, 그리고 니코틴의 긍정적 기능으로 흡연을 하면 장기간에 걸친 피곤하고 지루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생물학적 중독과 사회심리적 습관화의 구분을 전제한 상태에서 니코틴의 중독성 여부를 판단했다.<sup>94</sup>

더욱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는 중독성에 대한 의학적·사회학적 지식, 범주

93 “조경란 부장판사, 골초 아버지 폐암 숨졌지만, 담배중독은 개인 의지 문제”, 『중앙일보』, 2007. 1. 26.

94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 심재석, 사건번호 2005가합73599 판결문, 2011년 12월 19일, 11-13.

및 그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적·시대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피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사회 여건상 현재에 비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건강저해물질에 대한 제조자의 배려 의무) 등에 관하여 사회 전반의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현재의 잣대로서 평가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sup>95</sup> 판결에서는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한 논쟁을 피고가 제시한 증거 및 기존의 중독과 습관화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해석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흡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흡연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봄이 상당한 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니코틴 의존성의 정도가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sup>96</sup>

2005년 소송 후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원고 측은 담배의 “중독성도 의지만 있다면 금연”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결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처지를 강조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정미화 변호사는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지만 하자가 없는 제품이며, 이를 만드는 회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원고와 그 유가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흡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과로로 인한 유족 보상을 거부당했으며, 담배 소송을 통해서도 “담배를 피운 원고가 잘못된 것”이지 KT&G는 이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데, 이에 사망한 원고의 부인은 “국가도, 담배 회사도 책임이 없다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sup>97</sup>

본 논문은 한국의 담배 소송에서 중독의 신경 과학이 중독과 자유 의지, 개인의 선택과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통적으로 담배라는 중독 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식별하는 법리 공방의 과정 중 중독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치료라는, 공공 정책상 여러 행위자들의 역동적 경합과 맞물린 중독의

95 같은 문서, 23.

96 같은 문서, 11-13.

97 “폐암사망 경찰 두 번 죽인 대한민국”, 『내일신문』, 2011. 12. 8.

신경 과학을 동원했으나, 그들이 각각 동원한 신경 과학의 스타일은 상반되었다. 원고측은 흡연이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흡연자의 주체적 역할(agency)과 통제력을 잃게 하지만, 담배 산업은 흡연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에 책임 있는 대처를 하지 않는 대신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담배와 관련된 여러 위험을 평가한 결과 니코틴 의존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자유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배 소송 자체가 니코틴에 탐닉하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이들이 사법 체계를 오용하여 책임 회피 및 담배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본 논문은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법부와 미국 사법부가 신경 과학 증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 법적 전통의 차이와 같은 비교법적 논의(comparative legal history) 혹은 위험이나 개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 통념과 태도의 차이 등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담배 소송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법부가 원고 및 피고 양측이 제시한 중독의 신경 과학과 자유 의지에 대한 지식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작인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탄력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 지식을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니코틴 중독의 원인으로 가장 식별이 용이한 흡연자의 자유 의지와 선택이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음을 보였다.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제도적 영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편견을 공식화했다면, 원고를 “불법 흡연자”이자 이들의 중독이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지정한 담당 판사의 인터뷰는 대중적 영역에서 흡연자가 지나치게 담배를 탐닉하면서, 관련 위험을 판단하여 금연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자, 자신들이 초래한 문제를 오히려 담배 회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중독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독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낙인을 함축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례는 중독의 신경 과학을 동원하여 최근 부상하는 중독 산업을 규제하거나 이의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전략들의 사용에 있어 몇몇 문제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중독에 대한 새로운 과학사적 연구들은 이미 20세기 초·중반부터 중독 산업체들이 중독의 기저에 있는 신경과학적 사실들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감정, 동기부여와 행동, 기억 등에 관련된 두뇌의 특정 대뇌 변연계(limbic system)를 자극하고, 이를 조작하는 상품의 설계를 통해

특정 자극과 흥분에 인간을 길들여 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데이비스 커트라이트(David Courtwright)와 같은 역사학자는 커피에서부터 마약, 담배, 탄산 음료와 설탕, 그리고 쇼핑과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대뇌 변연계가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극된다면,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속적 구매와 소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를 변연 자본주의(limbic capitalism)라 지칭하며, 변연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으로 21세기 현재 우리는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선언한다.<sup>98</sup> 변연 자본주의 시대에, 탄산 음료와 설탕, 도박과 디지털 게임 같은 중독 관련 산업에서 법적 책임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중독의 신경 과학적 지식이 지니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중독자에 대한 심리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을 비이성적 중독자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법적 전략을 구사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배 소송에서 나타난 신경 과학 논의의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담배 산업은 중독의 폐해에 대한 책임을 중독자에게 전가하여 규제와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에 신경 과학적 지식이 적극적이고도 전문적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투고: 2019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1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 2019년 12월 20일)

<sup>98</sup> Natasha Dow Schüll, *Addiction by Design: Machine Gambling in Las Veg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Gary S. Cross and Robert Proctor eds., *Packaged Pleasures: How Technology and Marketing Revolutionized Desi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David T. Courtwright, *The Age of Addiction: How Bad Habits Became Big Busi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The Neuroscience of Addiction, Free Will, and Legal Responsibility: Nicotine Addiction and Quitting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YI Doogab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1999, Gum-Ja Bae, inspired by a successful wave of American tobacco litigations in the 1990s, filed a civil lawsuit against KT&G Corporation, a state-sanctioned monopoly for tobacco and ginseng product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tobacco litigation by looking at the trans-Pacific circulation of biomedical knowledge and legal strategies. It focuses on the question of addiction, individual choice, and legal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analyzing how the neuroscience of addiction was mobilized for the co-construction of medical knowledge and legal responsibility. The Korean plaintiffs claimed that the neuroscience of addiction—the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cess of mood alterations, tolerance, and withdrawal symptoms—pointed to the loss of control in nicotine use, placing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squarely on the tobacco industry. The Korean tobacco industry, however, underscored that nicotine did not cause intoxication that would hamper smokers' ability to act rationally with respect to risks associated with cigarettes. The Korean tobacco industry thus mobilized the multinational tobacco industry's construction of the notion of quitting that stigmatized smokers as weak, irrational, and addictive individuals. In the end, the South Korean court exempted the Korean tobacco industry from responsibility, amplifying the defendant's stigmatization of smokers and their responsibility of risk-taking.

**Keywords.** Korean tobacco litigation, nicotine, addiction, neuroscience, legal responsibility